

제6조(진료비 체납 시 조치)

“갑”은 “을”이 청구한 진료비를 1개월 이상 체납 되었을 경우 “을”에게 약정 기일을 통보 하여야 한다. 단, 지불 약정 기일은 진료비 청구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하여 위약 시 “을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7조(계약 기간)

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쌍 방의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제8조(감면 혜택)

“을”의 병원 규정에 의한 “갑”의 공상 환자 진료비(외래 및 입원, 수술 포함) 및 종합건강검진, 예방접종 비용에 대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.

제9조(감면 대상)

1. “갑”의 소속 직원 및 공상 환자.
2. “갑”의 소속 직원 가족의 직계 존 비속, 지인을 포함하여 “갑”이 의뢰하는 환자 및 검진자는 “을”의 병원 규정에 의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.

제10조(해석 준용)

1. 이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다.
2.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, 관례에 따른다.

제11조(계약의 효력)

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성립한다.

제12조(계약의 해지)

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를 송달한 후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 하거나 상당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 년 5 월 18 일

“갑” : 김해시복지재단

“을” : 김 해 복 음 병 원

이 사 장 : 허 성 곤

병 원 장 : 김 인 열

